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270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개요	1
-------------	---

II.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
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 (임종득의원안, 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	7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 제 적용기한 연장	19
4.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8
5. 농·수협 조합원의 용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4
6.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1

I. 개요

1.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27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5.

(3) 회 부 일 : 2026. 3.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부문(농업용 면세유,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등, 농업인의 용자·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법인 농업경영,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가축 질병,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 행	임종득·윤준병·박대출의원안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 ○ 대상 -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양도 ○ 과세특례 - 양도소득세액 100% 감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대상 - 적용기한 연장 (임종득의원안) 2028년 12월 31일 (윤준병의원안) 2031년 12월 31일 (박대출의원안) 2029년 12월 31일 ○ 과세특례 - (현행과 동일)

*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박대출의원안 2026. 5. 22. 발의(의안번호 19053)

- ☐ 현행법¹⁾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되,
-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3년 이상” 자경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음.

- 각 개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임종득의원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윤준병의원안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박대출의원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동 특례는 2003년에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적용 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며, 2023년 정기회에서 “2026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로 적용 기한이 연장된 바 있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전망)
금액	12,435	16,323	20,459	16,482	10,664	9,033	6,563	7,150

* 동 수치는 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자경 후 양도하는 경우를 합산한 금액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참고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제도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제도 개요]

- 목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대상: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으로 보조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대상농지: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등
- 지급요건: 보조금 지급약정 체결 전까지 소유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64세 이하 전업농업인등**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시** 지급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첫째,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고령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은퇴와 농지 유동화를 촉진하여 세대 간 경영 이양을 활성화하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종료할 경우, 고령 농업인은 농지 매도를 통한 경영이양보다는 농지 상속 또는 비효율적인 영농 지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을 통한 영농 규모화 촉진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참고로, 2024년 농가 경영주는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49만 5천 가구(전체 농가의 50.8%)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33만 2천 가구(33.1%), 50대는 12만 5천 가구(12.9%) 순으로, 전년대비 70세 이상 경영주는 증가(+3.6%)하였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였음.

[2024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단위: 천 가구, %)

구 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4년	974(100.0%)	5(0.5%)	27(2.8%)	125(12.9%)	322(33.1%)	495(50.8%)
증 감	-25.3	-0.8	-5.7	-16.1	-20.1	17.4
증감률	-2.5	-15.4	-17.3	-11.4	-5.9	3.6

주: 증감,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

자료: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둘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는 성실 경작을 장려하여 농지 보전을 유도²⁾하고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음.

최근 10년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70% 수준에 머물러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 감면액을 농업인의 소득으로 환원하는 등 조세특례를 유지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간 농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B)
	농가소득(A)	비율(A/B)	
2015년	37,215	70.6%	52,683
2016년	37,197	69.5%	53,493
2017년	38,239	71.4%	53,577
2018년	42,066	73.5%	57,195
2019년	41,182	70.3%	58,545
2020년	45,029	72.8%	61,839
2021년	47,759	74.9%	63,771
2022년	46,153	69.7%	66,243
2023년	50,828	72.2%	70,389
2024년	50,597	69.9%	72,357

주: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및 비농업소득을 합한 농가의 총소득을 말함. 2019년부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동(洞)지역의 가구원 1인 이상 일반가구(농림어가 포함) 중 가구주 직업이 임금근로자인 가구를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2)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건의 개정안은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을 각각 상이하게 정하고 있는데(2028년 12월 31일(임동득의원안, 2년), 2029년 12월 31일(박대출의원안, 3년), 2031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5년)),
-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

문 의 처
02)6788-5150

3) 재정경제부는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임 종득의원안, 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66조) ○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 특례 ① 법인세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6\text{억원} \times \text{조합원 수} \times \text{소득률} \times \text{사업연도 월수} / 12)$ 한도 내 면제 - 그 외: $(1,200\text{만원} \times \text{조합원수} \times \text{사업연도 월수} / 12)$ 한도 내 면제 ②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 그 외: 1,200만원 이하 면제 * 나머지 5% 세율로 분리과세 ③ 양도소득세 - 농지, 초지,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 적용기한: <u>2026.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특례: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임종득의원안)</u> <u>2031. 12. 31.(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u>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67조) ○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어조합법인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 특례 ① 법인세 -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 (3천만원원×조합원 수×사업연도 월수/12) 한도 내 면제 - 그 외: (1,2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 월수/12) 한도 내 면제 ②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 1,200만원 이하 면제 * 나머지 5% 세율로 분리과세 ③ 양도소득세 -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u>2026. 12. 31.</u>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68조) ○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 ○ 특례 ① 법인세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50억원 × 소득률 × 사업연도 월수/12) 한도 내 면제 - 그 외: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②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 나머지 분리과세 ③ 양도소득세 - 농지, 초지,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 적용기한: <u>2026. 12. 31.</u>	○ 특례: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31. 12. 31.(윤준병의원안)</u>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특례: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임종득의원안)</u>

현 행	개정안
	<u>2031. 12. 31.(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u> ○ 시행일: 2027. 1. 1.(임종득의원안, 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신성범의원안 2026. 4. 21. 발의(의안번호 18480),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⁴⁾에 따라 농어업의 경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협업적 또는 기업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는 법인임.

이는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3년 말 기준 영농조합법인은 10,132개, 영어조합법인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719개, 농업회사법인은 16,387개가 운영되고 있음.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영농조합법인	10,568	11,016	11,137	10,163	10,230	10,136	11,337	10,001	10,132
영어조합법인	361	398	443	480	513	529	542	682	719
농업회사법인	7,209	9,097	10,721	11,617	13,085	14,363	14,268	16,103	16,38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합법인과 회사법인은 지향하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운영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음.

영농·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인 5인 이상의 발기가 필요하며 비농·어업인은 출자는 가능하지만 의결권은 제한되는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설립 가능하고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90%(총출자액 80억원 초과 시 8억원 제외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으며 의결권 제한도 없음.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 분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근거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립목적	협업적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수행
설립요건	농어업인 5인 이상 발기인 필요	농업인 1인 이상이 설립 가능
출 자	비농어업인은 준조합원으로서 출자 가능(의결권 없음)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90%까지(총출자액 80억원 초과시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 가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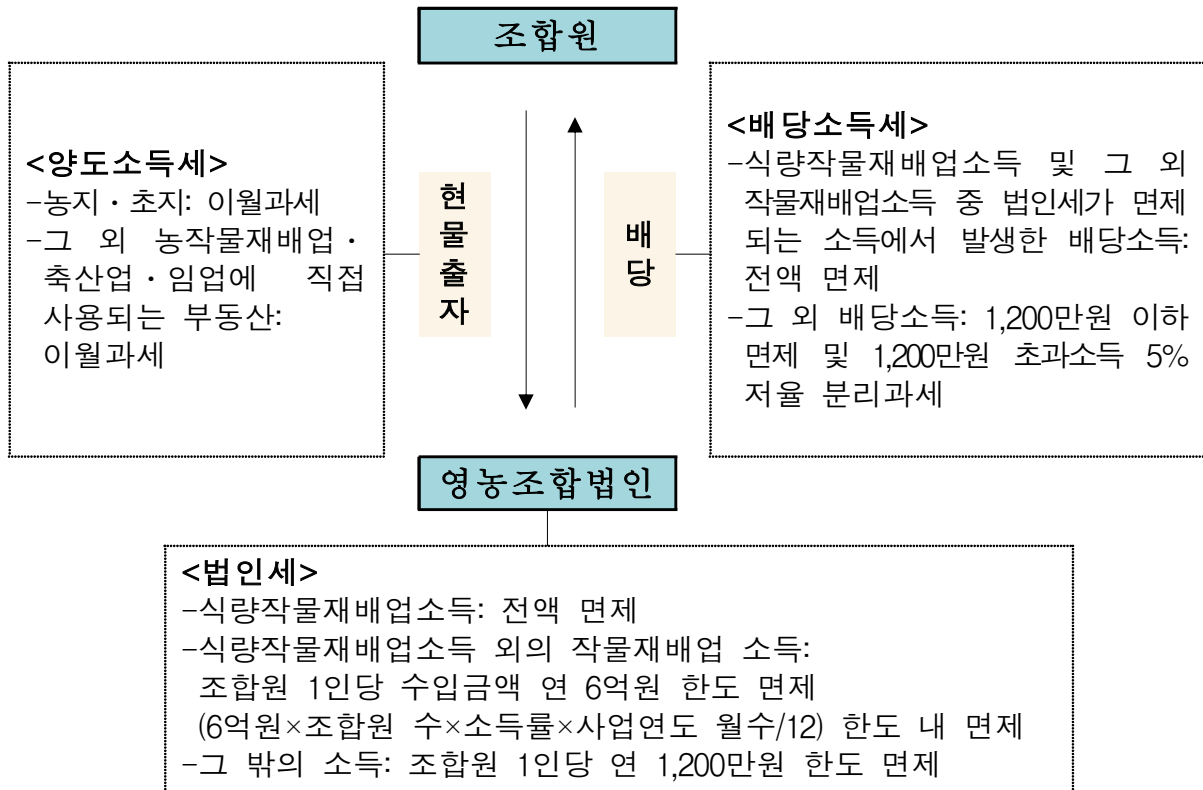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FTA(Free Trade Agreement) 체결과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제도 및 조세특례 도입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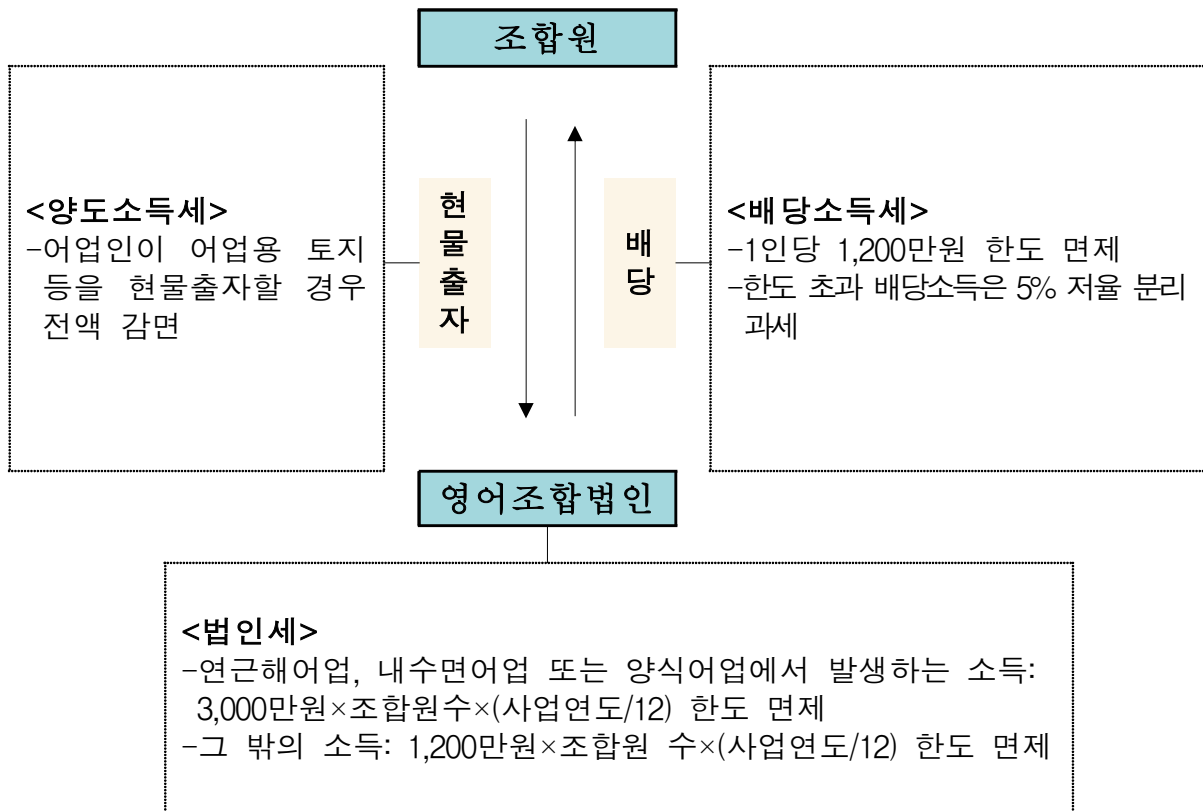
구 분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제도 도입	1990. 4. 7.	1996. 12. 31.	1995. 6. 23.
제도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조세특례 도입	1990. 1. 1.	1998. 1. 1.	1996. 1. 1.
조세특례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조세특례 내용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간 일부 차이는 있으나, ① (양도소득세)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초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허용하고, ② (법인세) 법인소득의 원천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며, ③ (배당소득세) 조합원·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의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분리과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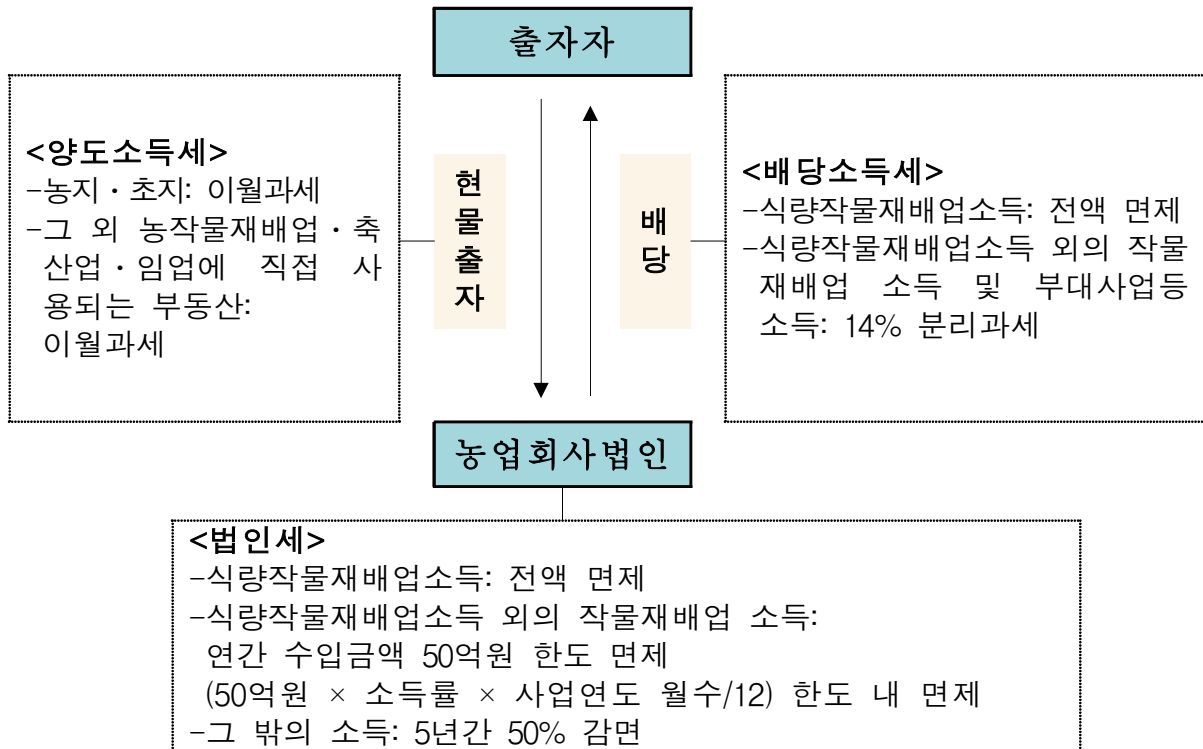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위 3개 조세특례는 1998년 전부개정 당시 일몰이 설정되어 2003년까지를 적용기한으로 하였으나, 이후 9차례에 걸쳐 적용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284	277	328	343	387	379	342	350	384	399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25	29	33	31	29	36	36	39	51	5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154	253	227	177	193	278	240	224	234	240
합계	463	559	588	551	609	693	618	613	669	691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024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 실적]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영농조합법인	2,241	16,079	15	333
영어조합법인	509	3,919	1	0
농업회사법인	687	9,700	10	40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영농조합법인	16	350	0	0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0	0	0	0

주: 국세청은 제6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실적을 합하여 공개하고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개정안은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협업적·기업적 농·어업 경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업 인력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농가인구의 65세 이상 비중은 51.3%이고 어가인구의 65세 이상 비중은 48.2%로 각각 5년 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20.3%) 대비 고령화 비율이 높은 상황임.

[연령 계층별 농가 인구와 전체인구 비교]

(단위: 천명, 세, %)

	2020	구성비	2025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인구	구성비
합 계	2,314	100.0	2,507	100.0	193	8.3	51,685	100.0
0~14세	100	4.3	72	2.9	-29	-28.4	5,258	10.2
15~64세	1,234	53.3	1,149	45.8	-85	-6.9	35,912	69.5
65세 이상	980	42.3	1,286	51.3	306	31.2	10,514	20.3
중위 연령	62.4		65.3		2.9		46.7	
고령인구 비중	42.3		51.3		9.0		20.3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2026. 4.

[연령 계층별 어가 인구와 전체인구 비교]

(단위: 천명, 세, %)

	2020	구성비	2025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인구	구성비
합 계	97	100.0	95	100.0	-2.4	-2.5	51,685	100.0
0~14세	6	5.7	4	4.1	-1.7	-30.5	5,258	10.2
15~64세	57	58.2	45	47.7	-11.4	-20.1	35,912	69.5
65세 이상	35	36.0	46	48.2	10.7	30.6	10,514	20.3
중위 연령	60.8		64.5		3.7		46.7	
고령인구 비중	36.0		48.2		12.1		20.3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2026. 4.

또한, 농·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 유도를 통한 법인의 규모화 및 자본구조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음.

둘째, 도시와 농·어촌간 소득격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및 위 법인의 주요 구성원인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최근 10년간 농·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낮은 편이고, 특히 농가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최근 10년간 농·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C)
	농가소득(A)	비율(A/C)	어가소득(B)	비율(B/C)	
2015년	37,215	70.6%	43,895	83.3%	52,683
2016년	37,197	69.5%	47,077	88.0%	53,493
2017년	38,239	71.4%	49,016	91.5%	53,577
2018년	42,066	73.5%	51,836	90.6%	57,195
2019년	41,182	70.3%	48,415	82.7%	58,545
2020년	45,029	72.8%	53,187	86.0%	61,839
2021년	47,759	74.9%	52,392	82.2%	63,771
2022년	46,153	69.7%	52,911	79.9%	66,243
2023년	50,828	72.2%	54,779	77.8%	70,389
2024년	50,597	69.9%	63,652	88.0%	72,357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의 총소득을 말함.
2019년부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동(洞)지역의 가구원 1인 이상 일반가구(농림어가 포함) 중
가구주 직업이 임금근로자인 가구를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 한편, 임종득의원안은 영농조합법인 등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신성범 의원안은 위 2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윤준병의원안은 이에 더해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까지 총 3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

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제3호)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28년 12월 31일</u> (임종득의원안) - <u>2029년 12월 31일</u> (엄태영의원안) - <u>2031년 12월 31일</u> (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엄태영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51),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박상웅의원안 2026. 3. 25. 발의(의안번호 17722),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위 4건의 개정안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년(임종득의원안), 3년(엄태영의원안) 또는 5년(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연장함으로써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한편, 각종 자연재해·가축질병·FTA 확대 등으로 농어업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취지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3호는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규모화·현대화를 촉진하여 농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라 1990년부터 도입·시행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당시 2003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적용기한을 정하였으나, 이후 8차례에 걸쳐 2~3년씩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⁶⁾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농어업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을 의뢰한 농어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도·농간 소득 격차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농·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2025년 어가 소득이 감소하여 도시근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6)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함.

로자가구소득 대비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등 소득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가·어가 가구당 연간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가구소득(C)
	소득(A)	비율(A/C)	소득(B)	비율(B/C)	
2021년	47,759	64.1	52,392	70.3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78,113
2023년	50,828	60.5	54,779	65.2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86,464
2025년	54,667	60.5	58,980	65.2	90,405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분기별 도시근로자가구소득(명목)의 합산액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둘째,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은 농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세제혜택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잠정)」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는 124만 2천 가구, 농가인구는 250만 7천명, 어가는 4만 7천 가구(해수면 기준), 어가 인구는 9만 5천명으로, 최근 20년 간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25년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가구 구성을 보면, 평균 가구원 수가 하락하는 추세이며 1인 가구 비중이 농가는 27.1%, 어가는 27.6%로 2020년 대비 각각 7.1%p,

9.5%p 증가하였음.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026. 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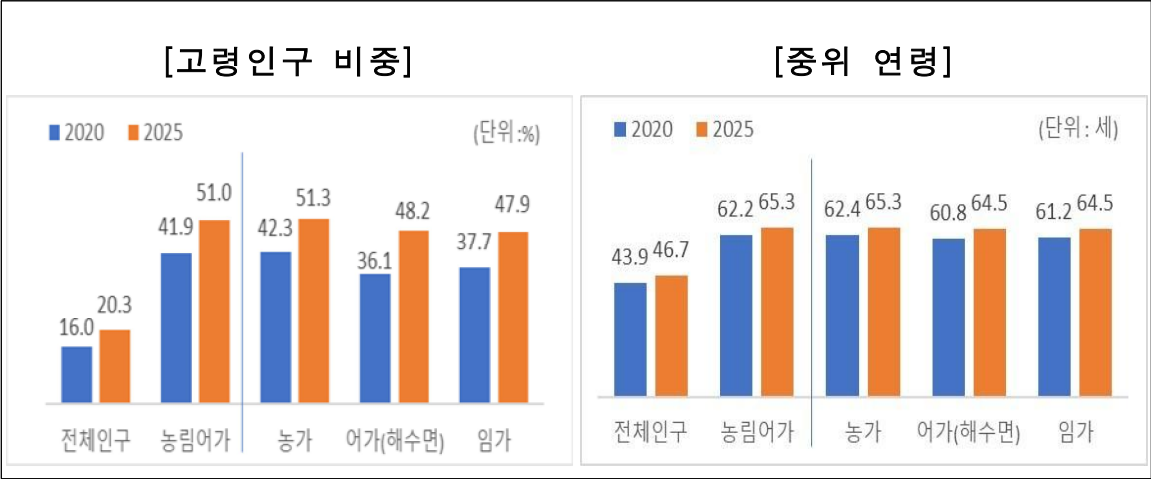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농·어업 기본구조 변화 현황]

구 분	단 위	2005	2010	2015	2020	2025
□ 농가 수 (전체가구 대비 비중)	천가구 (%)	1,273 (8.0)	1,177 (6.8)	1,089 (5.6)	1,035 (4.8)	1,242 (5.5)
□ 농가 인구 (전체인구 대비 비중)	천명 (%)	3,434 (7.3)	3,063 (6.4)	2,569 (5.1)	2,314 (4.5)	2,507 (4.8)
○ 평균 가구원	명	2.7	2.6	2.4	2.2	2.0
○ 성 비		95.4	96.1	96.9	99.4	100.8
○ 중위 연령	세	54.1	55.7	60.1	62.4	65.3
○ 연령별 구성						
- 0 ~ 14세	%	9.8	8.8	5.8	4.3	2.9
- 15 ~ 64세		61.1	59.4	55.8	53.3	45.8
- 65세 이상		29.1	31.8	38.4	42.3	51.3
□ 경영주						
○ 평균 연령	세	61.0	62.3	65.1	66.1	67.7
○ 연령 분포						
- 40대 이하	%	17.9	14.7	9.0	7.2	5.5
- 60대 이상		58.3	60.9	68.3	73.3	78.8
□ 어가 수 (전체가구 대비 비중)	천가구 (%)	80 (0.5)	66 (0.4)	55 (0.3)	43 (0.2)	47 (0.2)
□ 어가 인구 (전체인구 대비 비중)	천명 (%)	221 (0.5)	171 (0.4)	128 (0.3)	97 (0.2)	95 (0.2)
○ 평균 가구원	명	2.8	2.6	2.3	2.2	2.0
○ 성 비		100.2	100.0	100.8	105.1	105.0
○ 중위 연령	세	49.7	53.3	58.0	60.8	64.5
○ 연령별 구성						
- 0 ~ 14세	%	12.1	9.2	6.7	5.7	4.1
- 15 ~ 64세		69.1	67.7	62.8	58.2	47.7
- 65세 이상		18.8	23.1	30.5	36.1	48.2
□ 경영주						
○ 평균 연령	세	56.9	59.1	62.0	63.2	65.4
○ 연령 분포						
- 40대 이하	%	26.4	18.8	12.2	11.4	9.6
- 60대 이상		41.9	49.4	59.8	67.2	73.8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026. 4. 28.

또한 농어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을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25년 농가 고령인구 비중은 51.3%, 어가 고령인구 비중은 48.2%로 전체 인구 고령인구 비중 20.3% 대비 그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중위연령은 농가의 경우 65.3세, 어가의 경우 64.5세로 2020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 중위연령 46.7세와의 차이 역시 상당한 수준임.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고령인구·중위연령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026. 4. 28.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
 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외에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
 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축산·임·어업 분야 주요 국세감면제도]

근거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제106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등(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제70조·제87조의2·제88조의5),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한편,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감면기간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으며, 각 개정안은 2년(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2029년 12월 31일까지) 또는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농업경영 및 농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세수 감소분에 대해 2년 연장 시 총 88억원, 3년 연장 시 총 288억원, 5년 연장시 총 5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일몰기한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2028년말	△81	△95	-	-	-	△176	△88
~2029년말	△61	△92	△107	△28	-	△288	△72
~2031년말	△81	△95	△112	△131	△154	△573	△115

주: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귀속분의 경우 당해 연도에 3/4 징수, 차년도에 1/4 징수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조정
 2. 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 않아 추계에서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

4.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제106조의 2제1항제1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면세대상 -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 (임종득의원안, 정희용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 (엄태영의원안, 박성훈의원안, 김영환의원안) - 2031년 12월 31일 (김성원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2033년 12월 31일(김승수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엄태영의원안 2026. 3. 4. 발의(의안번호 17207),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박성훈의원안 2026. 3. 10. 발의(의안번호 17352), 김성원의원안 2026. 3. 17. 발의(의안번호 17534), 정희용의원안 2026. 3. 19. 발의(의안번호 17625), 박상웅의원안 2026. 3. 25. 발의(의안번호 17722),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김영환의원안 2026. 5. 8. 발의(의안번호 18895), 김승수의원안 2026. 5. 12. 발의(의안번호 18930)

☐ 위 9건의 개정안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임종득의원안, 정희

용의원안), 2029년 12월 31일(엄태영의원안, 박성훈의원안, 김영환의원안), 2031년 12월 31일(김성원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또는 2033년 12월 31일(김승수의원안)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동 조항은 1972년 신설된 것으로, 당초 연근해어업용 선박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6년에는 농업용 기계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 1990년부터 농업용을 추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임업용 석유류를 추가하였음. 또한 1999년부터 일몰제가 도입되어 2026년 말까지 일몰이 연장됨.

한편, 2012년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2012. 1. 2.)으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3년 단위로 연장하되,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4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출 금액은 8,954억원으로,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면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정부는 감면세액이 2025년 9,846억원, 2026년에는 1조 10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 억원)

세 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부가가치세	2,565	2,893	3,654	3,132	2,969	4,090	4,218
개별소비세	289	376	276	239	232	271	279
교통·에너지·환경세	7,997	7,421	5,019	4,692	4,973	4,599	4,697
교육세	1,243	1,169	794	739	780	886	910
소 계	12,094	11,859	9,743	8,802	8,954	9,846	10,104

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여 제외되었으며, 면제규모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임(「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자료: 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2025년 기준 면세유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경유가 1,625천kl로 면세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등유 365천kl, 휘발유 187천kl 순을 보이고 있음.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단위: 천kl)

유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휘발유	211	202	201	194	189	190	187
경유	1,782	1,855	1,766	1,666	1,662	1,626	1,625
중유	42	44	38	34	20	19	21
윤활유	8.3	8.3	8.1	7.1	7.1	7.2	7.1
LPG	11	15	17	19	18	19	21
등유	446	442	440	422	349	340	365
부생연료유	-	-	-	-	28	26	29
합 계	2,500	2,567	2,472	2,344	2,274	2,228	2,255

자료: 재정경제부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열악하다고 평가되는 농·임·어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민의 소득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2025년 어가·임가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 감소하는 등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농가·어가·임가 가구당 연간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임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
	소득(A)	비율(A/D)	소득(B)	비율(B/D)	소득(C)	비율(B/D)	
2021년	47,759	64.1	52,392	70.3	38,133	51.2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37,898	48.5	78,113
2023년	50,828	60.5	54,779	65.2	37,383	44.5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38,405	44.4	86,464
2025년	54,667	60.5	58,980	65.2	38,307	42.4	90,405

주: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농업·어업·임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비임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임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분기별 도시근로자가구소득(명목)의 합산액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임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동 제도를 통해 농·임·어업인의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지원하고 농·임·어업 생산 부가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농·임·어업인들의 가

계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둘째, 농·임·어업 생산물이 지니는 필수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동 조세특례는 농·임·어업 생산이 유발하는 연쇄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가되는 가격 부담을 줄여 농·임·어업 생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면서 국민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한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바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⁷⁾으로서 동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6년 말에 도래함에 따라 현재 심층평가가 진행 중임. 따라서 일몰연장의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

○ 적용기한에 대해 각 개정안은 2년(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2033년 12월 31일까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

7)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8) 재정경제부는 의무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세법개정 시 연장 여부 및 필요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

5. 농·수협 조합원의 융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면제(제116조제1항) ○ 면제대상 - 신탁,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및 어촌계, 엽연초생협,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증서(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 1억원 한도)(제5호) - 어린이예금통장, 신탁,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및 어촌계, 엽연초 생협, 산림조합 조합원의 예·적금 및 통장(제6호) -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농·어업경영 규모 확대사업에 대한 재산권 설정·이전 등 관련 증서(제7호) - 농협조합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또는 주택건축용 자재 외상구입 서류(제9호) - 「공유수면매립법」상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제11호) - 창업기업이 2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제19호)	☐ 인지세 면제(제116조제1항)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제116조제2항제3호) ○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 <u>2026년 12월 31일</u> ○ 제19호 - <u>2026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 <u>2028년 12월 31일</u> (임종득의원안) - <u>2029년 12월 31일</u> (박성훈의원안) - <u>2031년 12월 31일</u> (김성원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제19호 - <u>2031년 12월 31일</u> (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현 행	개 정 안
	- 2027년 1월 1일

*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박성훈의원안 2026. 3. 10. 발의(의안번호 17352), 김성원의원안 2026. 3. 17. 발의(의안번호 17534), 박성웅의원안 2026. 3. 25. 발의(의안번호 17722),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위 5건의 개정안은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 예·적금, 농어촌정비사업·농지은행사업 등 재산권 설정·이전 등 관련 서류 등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영세 농어민 등 조합원의 생활안정 지원 및 실질적 소득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임종득의원안은 2028년 12월 31일로 2년, 박성훈의원안은 2029년 12월 31일로 3년, 김성원의원안, 박성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은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임종득의원안, 박성훈의원안, 김성원의원안, 박성웅의원안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금전소비대차 관련 증서, 예·적금 및 통장,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재산권 설정·이전 등 관련 증서, 농촌주택개량자금 용자 등에 대해서만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반면 윤준병의원안은 창업기업이 창업 2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위해 작성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인지세법」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⁹⁾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농어업 관련 용자 서류 등에 관한 인지세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농·수협 조합원의 용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는 1970년 도입되었음. 제도 신설 당시에는 농협 등으로부터 용자 등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가 시행되었고, 예금·적금증서, 통장,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변경 등에 관한 서류는 1974년부터, 농협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구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및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는 1982년부터, 창업기업이 용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는 1997년부터 인지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지세 면제 특례대상 문서는 다음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른 인지세 면제대상 문서]

구 분	인지세 면제대상 문서	일몰기한
제5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의 조합·중앙회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단, 동일인이 받는 용자금액 합계액 1억원 이내 한정)	2026.12.31.
제6호	어린이예금통장,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제7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	

9)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 분	인지세 면제대상 문서	일몰기한
	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정주생활사업과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제9호	농협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 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11호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19호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제31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024.12.31.

주: 위에 적시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의 다른 호는 현재 모두 삭제

□ 인지세 면제 금액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제5호, 제19호), 농어촌 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 변경 등에 관한 증서(제7호), 농촌주택 개량자금 융자 관련 서류(제9호),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제11호)의 경우 기재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이며,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제6호)에 대해서는 100원의 인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에 의해 면제되는 인지세액]

구 분	증서 기재금액	세액	비 고
· 신탁·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으로부터의 금전소비대차(1 억원 이하) 관련 증서(제5호) · 농어촌정비사업·농지은행사업 등 관련 재산권 설정·이전 등 관련 서류(제7호) ·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등 관련 서류(제9호) ·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제11호) · 창업자가 창업 2년 내 금융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제19호)	1,000만원~3,000만원	2만원	* 과세문서로서 기재 금액이 없는 경우 ① 과세문서에 표기된 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계산된 금액 ② 기재금액을 계산 할 수 없을 때: 2만원
	3,000만원~5,000만원	4만원	
	5,000만원~1억원	7만원	
	1억원~10억원	15만원	
	10억원~	35만원	
·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통장 등(제6호)	(해당사항 없음)	100원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 및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동 조세특례는 적용기한이 계속 연장됨에 따라 제도가 유지되어 왔으며, 위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따라 일몰이 종료하는 농·임·어업인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특례가 연장될 경우 농·임·어업인 및 서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소득보전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2025년 어가·임가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 감소하는 등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농가·어가·임가 가구당 연간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임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
	소득(A)	비율(A/D)	소득(B)	비율(B/D)	소득(C)	비율(B/D)	
2021년	47,759	64.1	52,392	70.3	38,133	51.2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37,898	48.5	78,113
2023년	50,828	60.5	54,779	65.2	37,383	44.5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38,405	44.4	86,464
2025년	54,667	60.5	58,980	65.2	38,307	42.4	90,405

주: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농업·어업·임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비임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임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분기별 도시근로자가구소득(명목)의 합산액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임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부수비용인 인지세를 면제하는 것은 농·임·어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의 면제 제도”가 선정·평가되었는데, ① 동 조세특례는 농어민의 소득 향상, 서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적 생활 도모 측면에서 특례의 정책목적이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②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 등과 신용수준이 낮은 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소비대차증서 인지세 한도(1억원) 상 고액 자산 농어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③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수준이 낮은 수혜대상일수록 동 조세특례를 통한 지

원효과가 커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므로, 동 면제 제도를 일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음.

□ 다만, 적용기한에 대해 각 개정안은 2년(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⁰⁾

문 의 처
02)6788-5147

10) 재정경제부는 지원실적,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6.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제121조의23제10항) ○ 면제대상 -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자회사 포함)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28년 12월 31일</u> (임종득의원안) - <u>2029년 12월 31일</u> (박성훈의원안) - <u>2031년 12월 31일</u> (김성원의원안, 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박성훈의원안 2026. 3. 10. 발의(의안번호 17352), 김성원의원안 2026. 3. 17. 발의(의안번호 17534), 신성범의원안 2026. 4. 21. 발의(의안번호 18480),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위 5건의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간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연장하여 농협중앙회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임종득의원안은 2028년 12월 31일로 2년, 박성훈의원안은 2029년 12월 31일로 3년, 김성원의원안, 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은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는 인사, 급여, 교육, 유통 등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전산시스템의 운영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농협정보시스템에서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 원칙적으로는 농협중앙회, 농협은행과 농협정보시스템이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탁한 법인으로부터 시스템 운영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10항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시스템의 운영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¹¹⁾.

□ 동 면세제도는 2012년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현재까지 적용기한이 5회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2009년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각각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¹²⁾을 국회에 제출하였고¹³⁾, 이후 해당 내용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농협정보시스템은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 전에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구조개편 전부터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 왔음. 따라서 농협정보시스템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020호, 2009. 12. 16. 정부 제출)

13) 정부가 농협의 구조개편을 추진한 것은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자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음.

(대안)」¹⁴⁾에 반영되어 2012년 3월 2일 시행되었음.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농협에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조세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데,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그 중 하나였음. 현재의 농협중앙회, 농협은행과 그 외 농협 자회사는 구조개편 전에는 같은 법인(농협중앙회)에 속해 있었으므로 상호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구조개편으로 법인이 분리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새롭게 발생한 것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 제도는 2011년 12월 31일 세법 개정으로 2013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적용기한이 계속 연장되어 왔음.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연혁]

개정일	개정 내용
2011. 12. 31. (도입)	중앙회 → 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보·손보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2013년 12월말)
2014. 1. 1. (1차 개정)	적용기한 4년 연장(∼2017년 12월말)
2016. 12. 20. (2차 개정)	면제대상 전산용역 추가: 농협은행 → 중앙회, 금융지주회사, 농협생보·손보사
2017. 12. 19. (3차 개정)	적용기한 2년 연장(∼2019년 12월말)
2019. 12. 31. (4차 개정)	적용기한 2년 연장(∼2021년 12월말)
2021. 12. 28. (5차 개정)	적용기한 2년 연장(∼2023년 12월말)
2023. 12. 31. (6차 개정)	적용기한 3년 연장(∼2026년 12월말)

□ 농협 전산용역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하나로유통·양곡과, 금융지주·은행·생명·손해보험에 전산용역을 공급하고 있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1811085호, 2011. 3. 1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

으며, 공급가액은 2025년 기준 265억 6,100만원임. 한편,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및 금융지주·생명·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공급가액은 2025년 기준 381억 6,200만원 수준임.

[농협중앙회 공급 전산용역 현황]

수탁기관	위탁기관	위탁 전산시스템	전산용역	공급가액(백 만 원)	
			2023년	2024년	2025년
농협 중앙회	농협경제지주	·관리시스템	16,763	15,543	12,971
	농협하나로유통	·경영정보시스템	1,388	1,309	985
		·경제·유통시스템			
	농협양곡	·인프라, 통신, 정보보호 등 ※ 25년 이후 유통시스템 제외	39	42	41
	NH농협금융지주	·관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	593	829	696
	NH농협은행	·관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범농협 통합구매 등	8,920	8,954	9,240
	NH농협생명	·관리시스템	1,198	1,215	1,315
	NH농협손해보험	·범농협 통합구매 등	1,155	1,183	1,313
소 계			30,056	29,075	26,561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인프라 및 보안 운영 ·디지털금융 일부 등	38,767	38,768	35,190
	NH농협금융지주	·관리시스템 일부 ·리스크관리시스템 등	1,588	1,999	2,262
	NH농협생명	·관리시스템 일부 ·전산기기수급관리 등	317	359	416
	NH농협손해보험	·관리시스템 일부 ·전산기기수급관리 등	204	254	294
	소 계			40,876	41,380
합 계			70,932	70,455	64,723

주: 전산용역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의미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는 2023년 70억 9,300만원 2024년 70억 4,600만원, 2025년 64억 7,200만원 수준임. 2025년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별 감면규모는 농

협중앙회 35억 1,900만원, 농협은행 9억 2,400만원, 경제지주 12억 9,700만원 등 기타 회사 20억 2,900만원이었음.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단위: 백만원)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면제	농협중앙회 부담분	3,877	3,877	3,519
	농협은행 부담분	892	895	924
	기 타	2,325	2,273	2,029
	계	7,093	7,046	6,472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간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정부가 주도한 농협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농협은 농업인의 이익을 위하여 농민자본으로 구성된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협의 구조개편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개편으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부담까지 농협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당시 농림수산물식품위원회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개정 관련 합의사항으로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¹⁵⁾.

둘째, 농협중앙회 등은 회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농업·축산 경제사업, 상호금융사업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협중앙회 등의 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임.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농협중앙회의 세부담 증가로 인한 고유목적사업 재원의 감소로 농업인 지원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농협중앙회가 공급받는 전산용역은 대부분 농협조합을 위한 것으로서 동 과세특례가 폐지될 경우 농협조합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2025년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산용역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의 부담 구조를 보면, 총 감면세액 35억 1,900만원 중 76%인 26억 6,400만원을 농협조합이 부담하고

15) 당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농협법 개정관련 합의사항’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법 통과 이후 실사를 하여 확정된 자본금의 30% 이상을 경제사업부문에 우선 배분함.
- 정부는 농협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다른 농업부문의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함.
- 정부는 사업구조개편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수준 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함.

있는바, 동 면세 특례가 일몰될 경우 농협조합의 세부담이 26억 6,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2025년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산용역 비용 분담 구조]

(단위: 백만원, %)

구 분	농협조합	중앙회	경제지주	합 계
분담금액	26,641	6,971	1,578	35,190
감면세액	2,664	697	158	3,519
비 중	76	20	4	100

자료: 농협중앙회

□ 다만, 동 과세특례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지원적 성격임을 감안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면세는 농협이 분할된 이후 안정화를 위한 일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사업구조 개편 완료 이후에도 동 면세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은 2012년부터 실시되어 2017년 경제사업 완전 분리를 통해 최종 완료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 당시 적용되었던 부가가치세 면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의 한시적 운영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제도의 관행적 연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히 전산용역의 경우 구조개편의 궁극적인 목표인 농민 지원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구조 개편 이후 조직 안정화의

임시방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¹⁶⁾

둘째, 타 법인에 대해서는 전산용역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바,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¹⁷⁾

「부가가치세법」상 법인격이 분리된 주체 간의 용역 공급은 과세 거래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임. 이에 따라 일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명칭사용권(상표권) 및 전산시스템 위탁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반면,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및 경제·금융지주회사 간 용역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어 과세형평성 상 적정하지 않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83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464억원(연평균 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16) 기획재정부,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8) 농협·수협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3.

17) 기획재정부,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8) 농협·수협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3.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일몰기한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2028년말	△83	△88	-	-	-	△170	△85
~2029년말	△83	△88	△93	-	-	△263	△88
~2031년말	△83	△88	△93	△98	△103	△464	△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만,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감면기간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는데, 각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2년(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2029년 12월 31일까지) 또는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연장할 경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⁸⁾

문 의 처

02)6788-5147

18) 재정경제부는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 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 및 필요시 제도개선 필요사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